

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186호

의 안 명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대상기관 법무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의 결 일 2020. 5. 11.

주 문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5월 11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 별지 >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2020. 5.

|| 순 서 ||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1. 손해배상 개요	2
2. 일실이익 산정 방법	4
III. 실태 및 문제점	7
1. 일실이익 산정 시 군복무기간 및 소득액 반영 부적정 ...	7
2. 불합리한 중간이자 공제방식 적용	11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3
IV. 개선방안	14
1. 일실이익 산정 시 군복무기간 및 소득액 합리적 인정	14
2.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합리적 개선	16
V. 조치사항	18
[붙임 1] 관련법령	19
[붙임 2] 월별 호프만(H) 및 라이프니츠(L) 계수표	23
[붙임 3]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내용	24

I. 추진 배경 및 경과

-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국정과제: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4번)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100대 국정과제 89번)

□ 추진배경

- 최근 손해배상 시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기간(가동기간)이 60세에서 65세로 확대되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 미성년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할 경우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빼고 산정하는 것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
 - 이는 군 의무복무로 인해 여성이나 군 면제자 등에 비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 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음
 - 또한 보험업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장기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불합리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적게 산정
- ※ 「헌법」 제39조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최근 ○○펜션 가스누출 사고로 사망한 고3 남학생들의 경우 군복무기간 2년을 빼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취업가능 연령이 19세에서 21세로 상향되어 손해배상액이 약 2,500만 원 정도가 줄어듦 (‘19.4. 언론보도)
- 이에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소지를 해소하여 군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19. 12월 ~ ‘20. 2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 3월 ~ 4월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 5월

Ⅱ. 제도 현황

1 손해배상 개요

□ 일반 원칙

-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하여 배상받는 제도로,
 - 불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배상 범위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
 - 배상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나 손익이 있는 경우 배상 금액에서 과실상계 또는 손익상계 함

□ 법적 근거

- 「민법」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및 방법, 배상액의 예정, 과실상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를 준용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3조(준용규정)
-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을 적용
 - ※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3조(배상기준),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

-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보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4조(민법의 적용),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손해배상 범위

- 재산상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만 배상하는 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배상

< 신체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

구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사망 시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상해 시 (후유장해 시)	치료비, 입원비, 이송비, 통원비, 간병비 등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 「손해 3분설」 대법원 판례

-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실로 피해자 사망 시에는 장례비, 상해 시에는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이 해당
- 소극적 손해는 피해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장래의 이익인 일실이익*(逸失利益)이나 휴업손해 등이 해당
 - * 상실수익액, 일실수익, 일실수입 등을 혼용하나 본문에서는 일실이익으로 통일
 - 일실이익은 취업가능기간, 월 소득액 등에 따라 결정되며, 취업가능기간은 연령, 직업,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짐
 - 휴업손해는 입원 또는 요양기간 중 발생한 실제 수입 감소액
-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급부로 위자료가 이에 해당

2 일실이익[逸失利益] 산정 방법

□ 산출 기준

-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뺀 뒤 취업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장래 소득액을 산출하고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
 - 일시금 지급 시에는 장래의 기간에 대한 중간이자를 단리방식(호프만식) 또는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으로 공제하여 **현가로 환산·지급**
- ※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제3조의2(공제액),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업법」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보험감독규정」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 월 소득액은 사망 또는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평균 현실소득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
 - 미성년자, 가사종사자, 무직자 등 현실소득이 없거나 소득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 취업가능기간은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정년까지로 산정
 - 군복무 해당자는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감산하여 산정
- ※ 당초 가동연한은 60세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판결함에 따라 개정('19.4.2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피해자 사망 시의 일실이익 계산식

- ▶ 「국가배상법」 상
 $\text{월급여액} \times (1 - \text{생활비율}) \times \text{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생활비율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30%, 없을 경우 35%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자동차보험 표준약관)
 $(\text{월평균 현실소득액} - \text{생활비}) \times (\text{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text{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 생활비 :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의 1/3

□ 중간이자의 공제

- 일실회익은 장래에 경제활동을 통해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나 사고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
 - 공제 방법은 매번 계산하기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대상기간별 현재 계수를 미리 계산해 표로 작성해놓고 해당 월의 계수를 적용
 - 중간이자 계수는 단리나 복리 등 공제방식에 따라 호프만계수 또는 라이프니츠계수로 구분되며 이자율은 **법정이자 연5%**를 적용

〈중간이자 계수 산식〉

$$\begin{aligned} \text{호프만계수} &=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 \text{라이프니츠계수} &= \frac{1}{1+i} + \frac{1}{(1+i)^2} + \dots + \frac{1}{(1+i)^n} \end{aligned}$$

i=5%/12, n=취업가능월수

월수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츠계수	월수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츠계수
1	0.9958	0.9958	41	37.7789	37.6172
2	1.9875	1.9875	42	38.6299	38.4570
3	2.9752	2.9751	43	39.4780	39.2933
4	3.9588	3.9586	44	40.3231	40.1261
5	4.9384	4.9381	45	41.1652	40.9554
⋮	⋮	⋮	⋮	⋮	⋮

- 단리나 복리의 중간이자 공제 방법은 모두 허용되며 국가배상 및 법원 판결은 호프만계수를, 자동차보험은 라이프니츠계수를 적용

※ 대법원 83다191 판결('83.6.28.)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 호프만 라이프니츠방식 모두 인정

< 호프만 및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 연혁 >

법원 판결	국가배상	자동차보험
초기 호프만식이 일반적		초기 호프만식 채택
'76.12. 서울민사지법 판결에서 라이프니츠식 처음 채택		
'80. 9. 서울민사지법 교통사고 전담부에서 라이프니츠식 주로 채택, 혼용	'80. 2.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라이프니츠식 계산법 채택	'86. 9. 보험약관 개정 시 라이프니츠식 으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현재 대다수 판례는 호프만식 을 채택, 라이프니츠식은 거의 전무	'98. 2. 시행령 개정으로 호프만식 계산법 채택	

□ 일실했의 산정 예시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했의 산정

- 피해자 인적사항
 - 성별 : 여성
 - 연령 : 만 11세
- 직업 및 소득 : 학생, 소득 없음
- 주소지 : 시 소재지
- 피해자 과실비율 : 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 적용

- 일실했의는 월 소득액에서 생계비(월 소득액의 1/3)를 뺀 후 취업 가능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L)계수를 곱하여 산정

$$\text{일실했의} = (\text{월 소득액} - \text{생계비}) \times \text{취업가능기간에 대한 L계수}$$

- ① 월 소득액은 피해자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므로 공사부문 보통인부 및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금액으로 산정

- 보통인부 임금 138,290원과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79,552원의 평균 108,921원에 월 가동일수 25일 곱하여 월 소득액 2,723,025원

※ '20년 상반기 기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중소기업 임금조사」 적용(매 반기별로 조사·공표)

- ② 취업가능기간은 사고 시점인 만 11세부터 65세까지 648개월, 취업 개시연령인 만 19세까지는 96개월이므로, 적용계수는 144.9905임

- (648개월에 대한 계수 223.7799) - (96개월에 대한 계수 78.7894) = 144.9905

- ③ 일실했의 = 2,723,025원 - (2,723,025원 × 1/3) × 144.9905 = **263,208,054원**

< 적용 규정별 일실했의 산정 기준 >

	법원 판결	국가배상	자동차보험
월 소득액 (무직자)	주소지 기준 도시지역은 도시 보통인부 노임을, 농촌지역은 농촌일용임금을 각각 적용 월 가동일수 도시 22일, 농촌 25일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 단가 통계 적용 월 가동일수 22일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공사 부문 보통인부 및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 월 가동일수 25일
생계비	월소득의 1/3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소득의 30%, 없으면 35%	월소득의 1/3
중간이자	호프만계수 적용	호프만계수 적용	라이프니츠계수 적용

Ⅲ. 실태 및 문제점

1 일실이익 산정 시 군복무기간 및 소득액 반영 부적정

□ 군복무기간 및 소득액 반영 실태

- 「국가배상법」에서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사고 당시 군복무기간과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취업가능기간을 산정
 - 행정 규칙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예규)에서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을 반영하도록 규정
 - ※ 당초 군미필자인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취업가능기간을 산정토록 하였으나, 이를 군복무기간 중 군인봉급을 반영하도록 개정('19.4.12., 지침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군복무 해당자는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군 면제에 해당하는 뚜렷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군미필 남성은 현역복무자로 간주,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제외
 - ※ '20년에 군복무(예정)기간 중의 군인 봉급을 반영할 계획('20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 만 16세의 남성조카가 오토바이 탑승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와 손해배상액을 협의 중이나, 만 19세까지의 기간과 24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공제하고 배상액을 제시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음 ('18.5. 국민신문고)

〈 취업가능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관련 규정 〉

-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
-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병역미필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취업가능 기간에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2019.4.12 신설)
-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취업가능월수)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 군 의무복무로 인한 불이익 발생

- 군미필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 시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빼고 일실효익을 산정하는 것은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 차별 발생 및 위헌 소지
- 앞선 교통사고 사례에서 동일 조건에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함에 따라 일실효익은 2천 8백만 원 줄어듦
 - 군인 봉급을 반영하는 국가배상의 경우도 군복무기간 동안 여성과 다르게 월 270만원이 아닌 40만원만 인정되어 금전적 손해 발생
 - ※ 군복무기간 2년 간주 및 '20년 이병월급 기준, 군인봉급 반영 시는 약 2천 4백만원 감소
- 이는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되고**, 이러한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음
 -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9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성별에 따른 교통사고 사례의 일실효익 비교 >

구분	여성(만11세)	남성(만11세)
월 소득액(㉠)	2,723,025원	2,723,025원
생계비(㉡)=(㉠×1/3)	907,675원	907,675원
취업가능기간	648개월, 제외기간 96개월	648개월, 제외기간 120개월*
적용 계수(㉢)	223.7799 - 78.7894 = 144.9905	223.7799 - 94.2813 = 129.4986
일실효익 = {(㉠-㉡)×㉢}	263,208,054원	235,085,283원 (28,122,771원 ↓)

* 취업 시기는 만 19세로, 사고시점부터 96개월 이후이나 남성은 군복무로 24개월 늘어남

개월 수	1개월	96개월	120개월	648개월
라이프니츠(L)계수	0.9958	78.9894	94.2813	223.7799
호프만(H)계수	0.9958	80.6106	97.1451	313.6353

□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관행

-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시기는 '60년대로, 법적 근거나 기준은 없으며 군복무를 마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고착화

* 서울고법 1965.2.26. 선고 64나1043 판결, 만3세 아동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 우리나라는 징병제로 「병역법」에 따라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의무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남성은 경제활동을 할 것을 예측 가능
- 또 징병제가 무상 복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나 예산 제약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적절한 보상이 턱없이 미흡한 실정
- 이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손해배상에서도 일용노임을 현실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불이익한 처우임

※ '60년대 이병월급 160원에 불과, 현재 최저임금('17년 기준) 50%로 단계적 인상계획이나 복무 중 병역이행 외에도 기본권 제약, 기회비용 손실 등 고려 시 적정 대가로는 부족

- 저출산으로 병역의무자가 급감하고 병역의무 이행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모든 남성에게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거나 군인봉급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국방개혁 2.0과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등에 따라 직업군인 및 여군 비중을 지속 확대 중이며 모병제로의 전환 논의도 가속화된 상황

※ 병 인력 '20~'22년간 급감(33.3→25.7만 명), '37년 이후 20만 명 이하로 재차 급감, 반면 직업군인 비중은 2006년 25% → 2018년 33.1% → 2020년 39.5%까지 확대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까지
여군 비중 확대 계획	6.2%	6.7%	7.4%	8.8%

* 국방부, 국방개혁 2.0 및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 등

- 또 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도 '18년 기준 9.8만 명으로 의무복무 중인 병력의 25%에 달해 '모든 남성은 현역복무'라는 가정은 오류

※ 사회복무요원(5.8만 명)은 병사 월급과 동일하나 검직이 가능하며, 산업기능요원 등(4만 명)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음

군 복무기간의 제외 연혁

- ▶ **60년대 법원 판례**는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빼고 일실효익 산정
 - 법률상 근거 없이 실무에서 정착된 관행으로 1965. 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옴
 - 이러한 판례 등의 영향으로 1980. 2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시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빼도록 법제화 됨

* 서울고법 1965. 2. 26. 선고 64나1043 제4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만 3세 아동이 군용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임. 당시 군복무 기간은 3년으로, 성년에 이르러 군복무 3년을 마치고 만 24세 되는 때부터 55세까지가 가동기간이라고 판시하여 가동기간의 개시일을 만 24세부터 봄. 당시 민법 제4조는 만 20세부터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하였는데도 가동기간 기산일을 만 24세부터 한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판시함.

- ▶ **80년 이전 「국가배상법」**에서는 남녀 각 연령별로 확정된 배상금액을 지급
 - '80. 2월 시행령 개정 시 여성은 만 20세부터 60세까지 480개월, 남성은 만 23세부터 60세까지 444개월을 취업가능기간으로 하여 군복무기간 3년을 일괄 제외
 - '06.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제외하도록 함
 - ※ 현역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고 모든 남성이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점을 반영
 -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미성년 남성의 일실효익은 현역복무 가능성이나 복무기간 등을 명확히 할 수 없어 통상 육군 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제외
 - '19. 4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군복무기간 중 군인 봉급을 반영하여 일실효익을 산정하도록 함
 - ※ 장병 복무 여건 등의 획기적 개선을 국정과제로 하여, '17년도 최저임금 (1,352,230원)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이를 반영
 병장 월급 : '11년 103,800원, '17년 216,000원, '19년 405,700원
- ▶ **00년 「보험업감독업무처리지침」** 전부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군 의무복무자의 취업시기를 23세로, 면제자와 여성의 취업시기는 20세로 함
 - '05. 12월 표준약관 개정으로 취업시기는 20세로 하고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현재까지 유지
 - ※ '14.6.30.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시기만 만20세에서 19세로 변경

2 불합리한 중간이자 공제방식 적용

□ 중간이자 적용방식에 따른 일실회익 비교

- 중간이자 공제방법인 호프만·라이프니츠방식은 적용 이자율이 5%로 같지만 각각 단리·복리로 계산하여 일실회익 산정액에 차이 발생
-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라이프니츠방식을 적용한 앞선 예시에서 동일 조건에 호프만방식으로 계산하면 일실회익은 1억 6천만 원 늘어남
- ※ 실제 소송 시에는 중간이자 공제방법 외에도 월 소득액 산정기준도 차이 (소송 : 공사일용노임, 자동차보험 : 공사일용노임·제조단순노무임금의 평균금액)

< 동일 조건 下 단·복리 적용에 따른 일실회익 산정 내역 >

구분	라이프니츠방식(복리)	호프만방식(단리)
월 소득액(㉑)	2,723,025원	2,723,025원
생계비(㉒)=㉑×1/3)	907,675원	907,675원
취업가능기간	648개월, 제외기간 96개월	648개월, 제외기간 96개월
적용 계수(㉓)	223.7799 - 78.7894 = 144.9905	313.6353 - 80.6106 = 233.0247
일실회익 = {(㉑-㉒)×㉓}	263,208,054원	423,021,389원 (159,813,335원 ↑)

□ 과도한 중간이자 공제로 손해배상액 과소 산정

- 자동차보험은 일실회익을 현가로 환산할 때 법원과는 달리 과도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
 - 자동차보험과 법원 모두 중간이자로 법정이자율 5%를 적용하나 자동차보험은 이를 복리로 계산하여 상대적으로 중간이자를 과다 공제
 -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금리가 '15년 이후 1%대이고,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는 '20. 3월 기준 1.1%인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과도
- ※ 만기보험금 등에 붙여 지급하는 공사기준이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하면서도, 중간이자는 시장금리 대신 법정이자를 따르고 공제방식만 금융논리인 복리로 계산하는 모순 발생

< 연도별 기준금리 변동 추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2.0%	1.5%	1.25%	1.5%	1.75%	1.25%
보험 공시기준이율*	3.3%	2.5%	2.3%	2.5%	2.6%	2.3%

* 보험사 보험금·환급금 지급 시의 기준이율, 출처 : 한국은행·보험개발원

○ 반면, 법원의 경우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 피해자 구제라는 손해배상 의의에 보다 충실

- 또 장래 소득의 현가 환산 시 화폐가치의 하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를 중간이자 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다소 보완

* 학계에서는 장래 소득에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오랜 주장도 있고 「민법」상 법정이자율을 초저금리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제기

▪ 소비자보호원은 손보사들이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떼는 라이프니츠 방식 적용 등 법원의 판결기준에도 못 미치는 약관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판결 기준에 맞도록 약관을 재정비하도록 시정을 촉구함 ('023 언론보도)

□ 분쟁 증가 및 불공정 초래

○ 손해보험사와 법원의 중간이자 공제방식이 달라 동일 피해자라도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일실효익이 크게 달라져 분쟁이 증가

- 월 소득액, 취업가능기간 인정 등에 큰 다툼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 하게 되면 중간이자 공제액이 달라져 일실효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

○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는 피해구제가 더 절실히 필요함에도 소송 제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공정하게 작용

- 또 손해보험사는 이러한 일실효익의 차이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대응 여력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결과 초래

※ 교통사고 예시에서 보험처리 시 일실효익은 2억 6천만원, 소 제기 시는 4억 2천만원 (1억 6천만원 ↑)으로, 정보력이나 재력 등에 따라 배상액이 차이나 빈익빈 부익부 초래

< 연도별 손해보험업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 >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손보업계 분쟁건수	13,183	15,968	15,571	17,822	20,634	21,946	25,307

* 출처 :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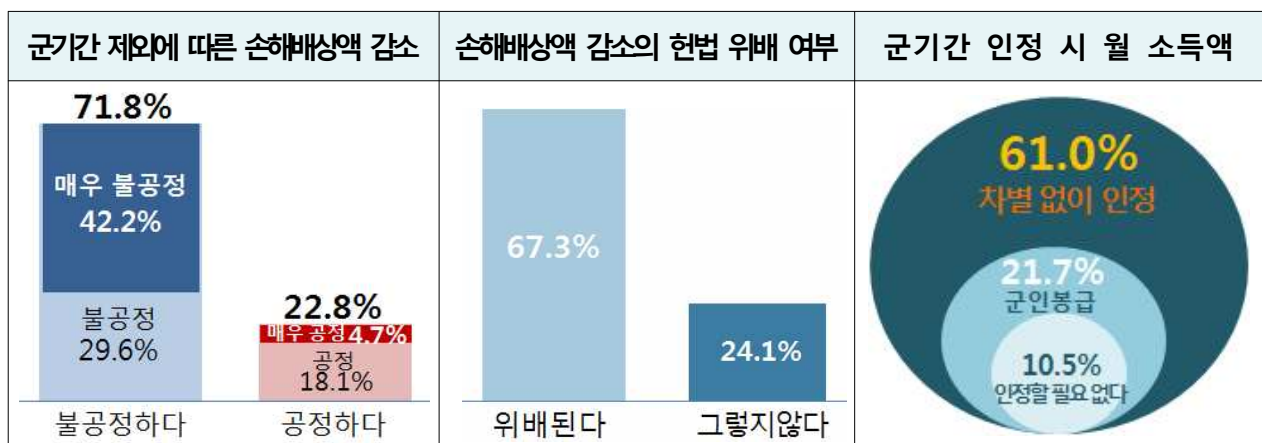
□ 조사 개요



- 설문주제(277명 참여, '20. 3.30. ~ 4. 8.)
- '군미필 남성의 불공정한 손해배상 개선'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
- 응답자현황 : 남성 60.9%, 여성 39.1% 응답
2·30대가 51.8%로 과반수,
40대 27.5%, 50대 13.0%,
60대 이상 6.9%, 10대 0.7% 순

□ 의견수렴 결과

- 군미필 남성의 손해배상 시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감소하는데 대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1.8%, 그중 매우 불공정하다는 42.2%
 - 또한 이러한 차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67.3%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군복무기간 인정 시 월 소득액은 여성 등과 차별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가 61.0%, 군인봉급 인정이 21.7%, 인정할 필요 없다고 10.5%로 조사



IV. 개선방안

1 일실이익 산정 시 군복무기간 및 소득액 합리적 인정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손해배상액 중 일실이익 산정 시 병역미필인 남성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
- 취업가능기간 중 남성의 군복무기간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여성·군 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적용
- 군인봉급 반영 기준 삭제 등 합리적 개선 검토

< (예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

현 행	개 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병역미필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취업가능 기간에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삭 제>

☞ 「국가배상법 시행령」 및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손해배상액 중 일실이익 산정 시 병역미필인 남성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

○ 군복무 해당자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

< (예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현 행		개 선	
자동차보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지급 기준		자동차보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생 략		가. 사 망 현행과 같음	
항 목	지급 기준	항 목	지급 기준
3. 상실 수익액	라. 취업가능월수 (1)~(3) 생략 (4) 취업시기는 19세로 <u>하되</u> <u>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u> <u>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u> <u>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u> <u>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u> <u>하여 적용함).</u>	3. 상실 수익액	라. 취업가능월수 (1)~(3) 현행과 같음 (4) 취업시기는 19세로 <u>함.</u>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中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2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합리적 개선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시 금리 상황과 법원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실이익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단리의 호프만방식**으로 개선

< (예시) 「보험업감독업무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현행		개선	
자동차보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지급 기준		자동차보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지급 기준	
가. 사망 생략		가. 사망 현행과 같음	
항목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u>라이프니츠 계수</u>를 곱하여 산정 — 〈산식〉 — $(\text{월평균현실소득액} - \text{생활비}) \times (\text{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text{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라. 생략 마. <u>라이프니츠 계수</u> : 법정이율 월 5/12%, <u>복리에</u>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 〈산식〉 — $\frac{1}{1+i} + \frac{1}{(1+i)^2} + \dots + \frac{1}{(1+i)^n}$ i=5/12%, n=취업가능월수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u>호프만 계수</u>를 곱하여 산정 — 〈산식〉 — $(\text{월평균현실소득액} - \text{생활비}) \times (\text{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text{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라. 현행과 같음 마. <u>호프만 계수</u> : 법정이율 월 5/12%, <u>단리에</u>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 〈산식〉 —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i=5/12%, n=취업가능월수	

현행		개선	
다. 후유장애 생략		다. 후유장애 현행과 같음	
항목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u>라이프니츠</u>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이하 생략)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u>라이프니츠계수</u>) 나~라. 생략 마. <u>라이프니츠</u>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u>호프만</u>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이하 현행과 같음)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u>호프만계수</u>) 나~라. 현행과 같음 마. <u>호프만</u>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中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① 일실효익 산정 시 군복무기간 및 소득액 합리적 인정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손해배상액 중 일실효익 산정 시 병역미필인 남성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 - 취업가능기간 중 남성의 군복무기간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여성군 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적용 - 군인봉급 반영 기준 삭제 등 합리적 개선 검토 ☞ 「국가배상법 시행령」 및 「국가 및 행협 배상 업무처리지침」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손해배상액 중 일실효익 산정 시 병역미필인 남성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 - 군복무 해당자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②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합리적 개선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시 금리 상황과 법원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실효익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단리의 호프만방식으로 개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 조치기한 : 2021. 12.

■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

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애(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애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공제액)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애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후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 부위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3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병역미필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취업가능 기간에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경찰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보험요율산출기관
-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 보험업법

-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세칙

-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감독규정 제7-49조제1호, 제7-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 관련)

☐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붙임 2
월별 호프만(H) 및 라이프니츠(L) 계수표

월수	호프만(H)계수	라이프니츠(L)계수	월수	호프만(H)계수	라이프니츠(L)계수
1	0.9958	0.9958	96	80.6106	78.9894
2	1.9875	1.9875	97	80.6106	79.6575
3	2.9752	2.9751	98	81.3228	80.3228
4	3.9588	3.9586	99	82.0328	80.9854
5	4.9384	4.9381	100	83.4467	81.6452
⋮	⋮	⋮	⋮	⋮	⋮
116	94.4673	91.8374	166	125.9672	119.6493
117	95.1395	92.4522	167	126.5568	120.1487
118	95.8099	93.0644	168	127.1451	120.6460
119	96.4784	93.6741	169	127.7319	121.1413
120	97.1451	94.2813	170	128.3172	121.6345
⋮	⋮	⋮	⋮	⋮	⋮
296	192.5630	169.9038	346	213.9484	183.0617
297	193.0099	170.1947	347	214.3573	183.2980
298	193.4560	170.4843	348	214.7654	183.5332
299	193.9013	170.7727	349	215.1729	183.7675
300	194.3457	171.0600	350	215.5797	184.0009
⋮	⋮	⋮	⋮	⋮	⋮
411	239.1736	196.5462	646	313.0944	223.6444
412	239.5417	196.7265	647	313.3650	223.7123
413	239.9092	196.9091	648	313.6353	223.7799
414	240.2762	197.0849	649	313.9052	223.8472
415	240.6426	197.2630	650	314.1749	223.9142
⋮	⋮	⋮	⋮	⋮	⋮
988	391.3988	236.0547	998	393.3445	236.2153
989	391.5940	236.0710	999	393.5382	236.2310
990	391.7892	236.0873	1000	393.7317	236.2467

1.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미필인 남성의 경우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알고 있었다	60명	21.6%
② 모르고 있었다(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218명	78.4%

2. 「대한민국헌법」 제39조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의 제외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그렇다	187명	67.3%
② 그렇지 않다	67명	24.1%
③ 모르겠다	24명	8.6%

3. 군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여 여성이나 군 면제자 등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매우 불공정하다	117명	42.2%
② 불공정하다	82명	29.6%
③ 공정하다	50명	18.1%
④ 매우 공정하다	13명	4.7%
⑤ 모르겠다	15명	5.4%

4. 미성년 남성의 손해배상 시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한다면 해당기간 중 월 소득액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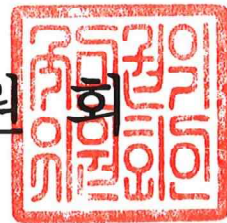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병역의무를 지지 않았다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차별 없이 인정	159명	57.4%
② 군인봉급	60명	21.7%
③ 인정할 필요 없다	29명	10.5%
④ 모르겠다	17명	6.1%
⑤ 기타	12명	4.3%

기타	최저임금 수준	6명	2.2%
	차별 없이 인정하거나 더 인정해주어야 함	4명	1.4%
	군인봉급의 1/3 수준	2명	0.7%

정 본 입 니 다 .

2020. 5. 12.

국 민 권 의 위 원



A C R C